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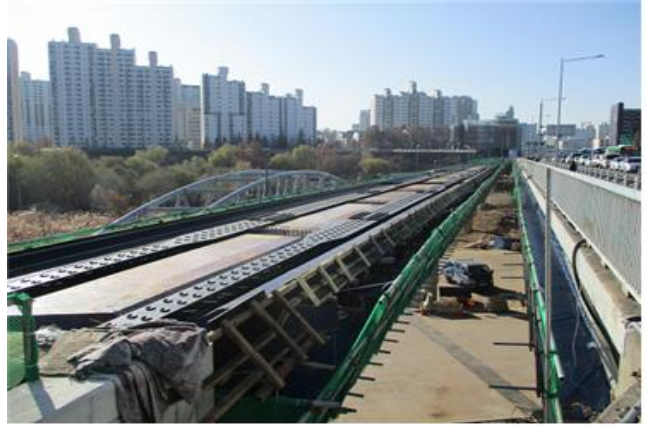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여의교 확장공사]

- 점검일시 : 2017.11.30 (목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정진혁, 최영준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여의교 A2 셋강역 방향 강교 상부에는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(안전난간, 안전대걸이시설등)을 설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기 바람.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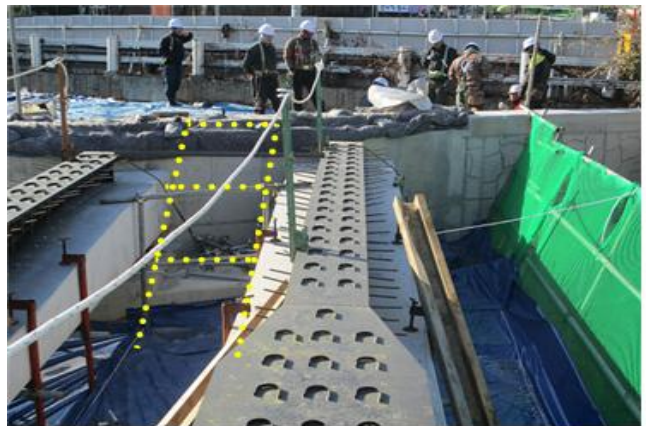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토목부)

- 여의교 P3 강교 단부 위에는 목재 팔레트가 낙하물 방지망 바깥쪽에 적치되어 있어 교량 하부로 낙하할 우려가 있으니 즉시 이동 조치하기 바람.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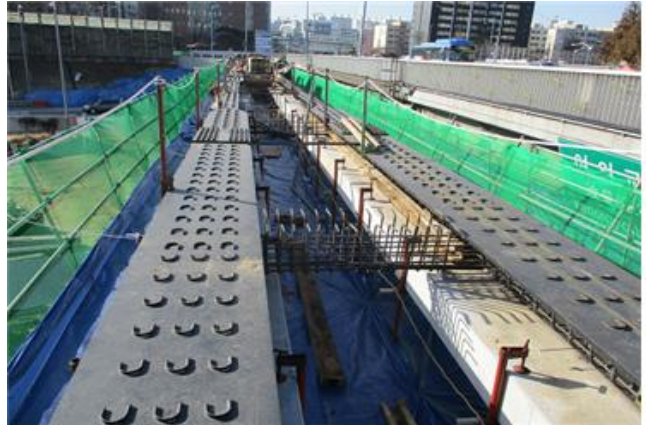
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여의교 대방역 방향 슬래브 거푸집 설치 작업장에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상승/하강 시설을 설치하기 바람,
 - 좌우 이동을 위하여 합판 통로가 설치되어 있으나, 목재받침을 사용하고 있어 전도우려가 있으니 견고한 구조의 근로자 가설통로를 확보하기 바람



- 아울러, 작업시에는 상·하부 동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.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토목부)

- 도장작업장 주변 자재운반구는 현장에서 임의로 제작된 운반구로 인양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사용을 금지하고 현장에서 반출하기 바람.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13(자재운반구)



○ 기계기구 안전(토목부)

- 현장에서 사용중인 핸드그라인더는 덮개를 분리하였으니 덮개를 설치하고 작업 요함.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(연삭숫돌의 덮개 등)



○ 기계기구 안전(토목부)

- 여의교 A1 방향 거푸집 설치구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형톱 및 철근조립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철근절단기 등 모든 위험기계·기구류는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기 또는 부착하기 바람.
 - 작업자가 현장을 이탈하거나,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에 의한 오작동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을 꺼놓은 상태로 관리하기 바람.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8(위험기계·기구 안전검사)



○ 기계기구 안전(토목부)

- A1 방향 거푸집 설치구간 선반형 목재가공용 둥근톱 사용시에는 ON/OFF 스위치 및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하기 바람,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기 바람.
 - 철근조립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절곡기의 풋스위치는 덮개가 미설치된 상태로 비상스위치 주변에 임의로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보완하기 바람
-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27(목재가공용 둥근톱),022(철근절단기 및 절곡기)



○ 보건 관리(토목부)

- 아치교 현장도장(상도) 작업자는 페인트가 비산하여 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보안경 및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 요망.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

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작업장 주변에 근로자가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, 흡연구역은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기 바람,
- 특히, A1 방향 강교 상부 거푸집 설치 작업장 주변은 흡연흔적이 있고, 화재발생 우려가 있으니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기 바람, 재발되지 않도록 근로자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.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(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)



○ 품질관리(토목부)

- 대방역 방향 강교 강재 프레임 연결부에 굳은 콘크리트 잔해물이 있으니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작업 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거하기 바람.

